

의안번호	2213943
의 퇴 인	이용우의원
회 답 일	2025.11.7.
추 계 번호	25E58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공제금액 170만원으로 조정 후 물가연동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기본공제금액을 170만원으로 인상
한 후,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2조 3,250억원, 2030년 4조 1,769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4조 5,291억원(연평균 2조 9,058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 (안 제50조제1항)	-23,250	-22,470	-25,864	-31,937	-41,769	-145,291	-29,058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0조1항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본공제금액을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 － (현행)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1명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본인 및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개정안) 1명당 공제금액을 17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기준연도의 결정 및 공제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0조1항 (기본공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5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징수기준)
- 2025년(귀속연도)부터 1명당 기본공제금액을 17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기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제
- 총급여규모(종합소득규모)별 1인당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은 향후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명목GDP성장률)을 따라 증가한다고 전제

[표 2]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제

(단위: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2.0	1.9	2.0	2.0	2.0	2.0
명목임금 상승률	2.9	3.3	3.2	3.3	3.3	3.3	3.3
명목GDP 증가율	6.2	3.2	4.0	3.9	3.7	3.5	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2025~2029」, 2025.9

□ 물가연동제 도입 후 기본공제금액 변동에 따른 산출세액의 변화를 세수 효과로 전제

- 기본공제 제도 개편에 따른 1인당 산출세액의 변화가 크지 않아¹⁾ 산출세액의 변동으로 인한 세액공제액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감면 실적

□ 2023년 근로소득자(결정세액 있는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기본공제 규모는 각각 36.5조원, 27.0조원으로 2018~2023년(5년) 동안 각각 연평균 2.4%, 8.4% 증가

[표 3]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적용인원	12,109	12,237	12,916	13,629	13,959	12,970
(증가율)	(6.7%)	(1.1%)	(5.5%)	(5.5%)	(2.4%)	(4.2%)
공제금액	340,508	342,641	353,294	364,928	365,300	353,334
(증가율)	(4.9%)	(0.6%)	(3.1%)	(3.3%)	(0.1%)	(2.4%)

주: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적용인원	7,463	7,844	9,334	10,270	11,475	9,277
(증가율)	(8.1%)	(5.1%)	(19.0%)	(10.0%)	(11.7%)	(10.7%)
공제금액	189,941	193,490	223,350	240,548	269,772	223,420
(증가율)	(5.2%)	(1.9%)	(15.4%)	(7.7%)	(12.1%)	(8.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근로소득세 1인당 최대 41만원, 종합소득세 1인당 최대 39만원

(2) 추계 방법

- 현행 기준 향후 5년간의 소득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을 전망한 후,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연도별 기본공제금액 변화분을 반영하여 개정안 기준 과세표준 전망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1인당 산출세액 변화분에 적용 인원(전망치)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세수효과 산출
- 총급여규모(종합소득규모)별 1인당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은 향후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명목GDP 성장률) 전망(2025.9.)을 따른다고 가정

[표 5] 1인당 총급여액 전망 : 귀속연도 기준

(단위: 백만원)

총급여 규모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천만 이하	4.7	4.8	5.0	5.2	5.3	5.5
1.5천만 이하	15.2	15.7	16.2	16.7	17.2	17.8
2천만 이하	18.7	19.3	20.0	20.6	21.3	22.0
3천만 이하	26.9	27.7	28.6	29.6	30.5	31.5
4천만 이하	37.0	38.2	39.4	40.7	42.1	43.4
4.5천만 이하	45.1	46.5	48.0	49.6	51.2	52.9
5천만 이하	50.4	52.0	53.7	55.5	57.3	59.1
6천만 이하	58.3	60.1	62.1	64.1	66.2	68.4
8천만 이하	73.5	75.8	78.3	80.8	83.5	86.2
1억 이하	94.5	97.5	100.7	104.0	107.4	110.9
2억 이하	138.0	142.4	147.0	151.8	156.8	161.9
3억 이하	251.8	259.9	268.3	277.1	286.2	295.5
5억 이하	395.8	408.4	421.7	435.5	449.7	464.4
10억 이하	702.9	725.3	749.0	773.5	798.7	824.7
10억 초과	2,084.6	2,151.2	2,221.5	2,294.1	2,368.9	2,446.1

주: 2023년 귀속 자료를 기준으로 전망

[표 6] 1인당 종합소득금액 전망 : 귀속연도 기준

(단위: 백만원)

종합소득금액 규모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천만 이하	5.9	6.1	6.3	6.6	6.8	7.0
2천만 이하	16.0	16.7	17.3	18.0	18.6	19.3
3.5천만 이하	29.0	30.1	31.3	32.4	33.6	34.7
4천만 이하	41.0	42.6	44.3	45.9	47.5	49.2
5천만 이하	48.9	50.9	52.9	54.8	56.7	58.7
6천만 이하	59.9	62.4	64.8	67.1	69.5	71.9
8천만 이하	75.6	78.6	81.7	84.6	87.6	90.7
1억 이하	97.6	101.6	105.5	109.4	113.2	117.1
2억 이하	148.2	154.2	160.1	166.0	171.8	177.8
3억 이하	264.7	275.3	285.9	296.4	306.8	317.5
5억 이하	414.7	431.3	448.1	464.5	480.7	497.6
7억 이하	642.0	667.8	693.7	719.1	744.3	770.3
10억 이하	906.2	942.5	979.0	1,014.9	1,050.4	1,087.2
10억 초과	2,718.5	2,827.7	2,937.2	3,044.8	3,151.4	3,261.7

주: 2023년 귀속 자료를 기준으로 전망

- 2023년 귀속 1인당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이 향후 5년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²⁾하에, 1인당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전망치에 동 비율을 곱하여 연도별 1인당 과세표준 전망
 - 현행 기준 향후 5년간의 1인당 과세표준에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연도별 기본공제금액 증가분을 차감하여 개정안 기준의 연도별 1인당 과세표준 전망
 - 1인당 기본공제금액 증가분은 2023년 귀속 총급여규모(종합소득규모)별 소득세 신고자 1인당 기본공제대상자 수(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수)가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급여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대상자 수에 연도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변화분(현행 대비 기본공제금액 증가분)을 곱하여 산출

[표 7]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연도별 기본공제금액 변화 : 귀속연도 기준

(단위: 만원)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기본공제금액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A)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개정안(B)	170.0	173.3	176.7	180.2	183.8	187.5
변화분(B-A)	20.0	23.3	26.7	30.2	33.8	37.5
(소비자물가상승률, %)	(2.0)	(1.9)	(2.0)	(2.0)	(2.0)	(2.0)

주: 개정안의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기본공제금액은 2025년(귀속연도)에 170만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기간은 전년도 1인당 기본공제금액에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을 곱하여 산출

2) 최근 5년(2019~2023, 귀속연도) 동안 1인당 총급여 대비 과세표준 비율(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은 '19년 60%, '20년 59%, '21년 61%, '22년 61%, '23년 62%로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급여 규모별로도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

[표 8] 총급여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변화분 전망 : 근로소득세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 규모	1인당 기본공제대상 인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천만 이하	—	—	—	—	—	—	—
1.5천만 이하	1.0	0.20	0.23	0.27	0.30	0.34	0.37
2천만 이하	1.0	0.21	0.24	0.28	0.31	0.35	0.39
3천만 이하	1.1	0.22	0.26	0.29	0.33	0.37	0.41
4천만 이하	1.2	0.25	0.29	0.33	0.37	0.41	0.46
4.5천만 이하	1.4	0.28	0.33	0.38	0.43	0.48	0.53
5천만 이하	1.6	0.32	0.37	0.43	0.49	0.54	0.60
6천만 이하	1.9	0.38	0.44	0.51	0.58	0.65	0.72
8천만 이하	2.4	0.48	0.55	0.63	0.72	0.80	0.89
1억 이하	2.7	0.54	0.62	0.72	0.81	0.91	1.01
2억 이하	3.0	0.59	0.69	0.79	0.89	1.00	1.11
3억 이하	2.8	0.57	0.66	0.76	0.86	0.96	1.07
5억 이하	2.6	0.53	0.61	0.70	0.80	0.89	0.99
10억 이하	2.5	0.51	0.59	0.68	0.77	0.86	0.96
10억 초과	2.3	0.46	0.54	0.62	0.70	0.78	0.87

주: 총급여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대상 인원 수에 연도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변화분(현행 대비 기본공제금액 증가분)을 곱하여 산출

[표 9] 종합소득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변화분 전망 : 종합소득세

(단위: 명, 백만원)

종합소득 규모	1인당 기본공제대상 인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천만 이하	1.2	0.24	0.27	0.31	0.36	0.40	0.44
2천만 이하	1.4	0.29	0.34	0.39	0.44	0.49	0.54
3.5천만 이하	1.7	0.33	0.39	0.45	0.51	0.57	0.63
4천만 이하	1.9	0.38	0.44	0.51	0.58	0.64	0.71
5천만 이하	2.0	0.40	0.47	0.54	0.61	0.68	0.76
6천만 이하	2.1	0.43	0.50	0.57	0.65	0.73	0.81
8천만 이하	2.3	0.46	0.53	0.61	0.69	0.78	0.86
1억 이하	2.4	0.47	0.55	0.63	0.71	0.80	0.88
2억 이하	2.4	0.48	0.56	0.64	0.73	0.82	0.91
3억 이하	2.3	0.47	0.54	0.62	0.70	0.79	0.87
5억 이하	2.3	0.46	0.54	0.62	0.70	0.78	0.87
7억 이하	2.3	0.46	0.54	0.62	0.70	0.78	0.87
10억 이하	2.3	0.46	0.53	0.61	0.69	0.77	0.86
10억 초과	2.1	0.42	0.49	0.56	0.64	0.71	0.79

주: 종합소득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대상 인원 수에 연도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변화분(현행 대비 기본공제금액 증가분) 곱하여 산출

- 현행 및 개정안의 총급여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하여 1인당 산출세액을 구하고,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산출세액 변화분에 적용 인원 전망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최종 세수효과 산출
 - 1인당 산출세액=1인당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표 10]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 시 1인당 세수효과 : 근로소득세

(단위: 백만원)

총급여 규모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천만 이하	-	-	-	-	-	-
1.5천만 이하	-0.01	-0.01	-0.02	-0.02	-0.02	-0.02
2천만 이하	-0.01	-0.01	-0.02	-0.02	-0.02	-0.02
3천만 이하	-0.01	-0.02	-0.02	-0.02	-0.03	-0.06
4천만 이하	-0.04	-0.04	-0.05	-0.06	-0.06	-0.07
4.5천만 이하	-0.04	-0.05	-0.06	-0.06	-0.07	-0.08
5천만 이하	-0.05	-0.06	-0.06	-0.07	-0.08	-0.09
6천만 이하	-0.06	-0.07	-0.08	-0.09	-0.10	-0.11
8천만 이하	-0.07	-0.08	-0.10	-0.11	-0.12	-0.21
1억 이하	-0.13	-0.15	-0.17	-0.19	-0.22	-0.24
2억 이하	-0.21	-0.24	-0.28	-0.31	-0.35	-0.39
3억 이하	-0.22	-0.25	-0.29	-0.33	-0.37	-0.41
5억 이하	-0.21	-0.25	-0.28	-0.32	-0.36	-0.40
10억 이하	-0.21	-0.25	-0.29	-0.32	-0.36	-0.40
10억 초과	-0.21	-0.24	-0.28	-0.31	-0.35	-0.39

[표 11]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 시 1인당 세수효과 : 종합소득세

(단위: 백만원)

종합소득금액 규모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천만 이하	-0.01	-0.02	-0.02	-0.02	-0.02	-0.03
2천만 이하	-0.02	-0.02	-0.02	-0.03	-0.03	-0.03
3.5천만 이하	-0.05	-0.06	-0.07	-0.08	-0.08	-0.09
4천만 이하	-0.06	-0.07	-0.08	-0.09	-0.10	-0.11
5천만 이하	-0.06	-0.07	-0.08	-0.09	-0.10	-0.11
6천만 이하	-0.06	-0.08	-0.14	-0.16	-0.17	-0.19
8천만 이하	-0.11	-0.13	-0.15	-0.17	-0.19	-0.21
1억 이하	-0.11	-0.13	-0.22	-0.25	-0.28	-0.31
2억 이하	-0.17	-0.20	-0.23	-0.26	-0.31	-0.34
3억 이하	-0.18	-0.21	-0.24	-0.27	-0.30	-0.33
5억 이하	-0.19	-0.22	-0.25	-0.28	-0.31	-0.35
7억 이하	-0.19	-0.23	-0.26	-0.29	-0.33	-0.36
10억 이하	-0.19	-0.22	-0.26	-0.29	-0.35	-0.39
10억 초과	-0.19	-0.22	-0.25	-0.29	-0.32	-0.36

- 향후 5년간 총급여규모(종합소득규모)별 기본공제 신청자 수 증가율은 최근 5년(2018~2023년) 동안의 소득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을 따른다고 전제
 - 개정안 적용 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본공제 신청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세수효과 추계³⁾
 - 총급여규모별 기본공제 신청 인원 적용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중복자) 제외

[표 1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기본공제 적용 인원 증가율

총급여 규모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2023 연평균
합계	7.0%	6.7%	1.1%	5.5%	5.5%	2.4%	4.2%
1천만 이하	-	-	-	-	-	-	-
1.5천만 이하	-8.7%	-8.0%	-8.2%	-2.6%	-3.4%	-4.5%	-5.4%
2천만 이하	1.4%	-23.7%	-16.4%	2.2%	-5.0%	-2.1%	-9.5%
3천만 이하	10.5%	17.6%	-1.5%	1.0%	-1.4%	-2.3%	2.4%
4천만 이하	6.7%	12.6%	2.9%	7.0%	8.0%	2.2%	6.4%
4.5천만 이하	7.8%	11.8%	4.9%	6.7%	7.6%	1.7%	6.5%
5천만 이하	8.6%	10.5%	4.7%	4.5%	8.2%	2.9%	6.1%
6천만 이하	7.5%	8.8%	4.8%	5.2%	8.2%	4.5%	6.3%
8천만 이하	4.7%	4.6%	3.5%	4.4%	7.0%	6.5%	5.2%
1억 이하	9.6%	7.4%	5.9%	6.8%	8.5%	7.2%	7.2%
2억 이하	11.4%	6.0%	6.9%	21.4%	17.5%	5.8%	11.3%
3억 이하	15.6%	8.5%	13.8%	35.8%	16.6%	4.0%	15.2%
5억 이하	15.8%	15.3%	12.5%	26.7%	16.1%	6.0%	15.1%
10억 이하	10.6%	11.3%	12.5%	23.3%	16.8%	1.4%	12.9%
10억 초과	5.7%	6.6%	19.4%	31.0%	7.0%	-3.8%	11.4%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

3) 종합소득세는 기본공제 적용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 통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규모별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 수 및 증가율 사용

[표 13]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증가율

종합소득금액 규모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2023 연평균
합계	8.3%	8.7%	1.7%	0.9%	12.0%	13.2%	7.2%
1천만 이하	6.3%	7.8%	-0.4%	-28.7%	6.4%	4.9%	-3.1%
2천만 이하	11.1%	9.2%	0.9%	16.5%	10.2%	9.0%	9.1%
3.5천만 이하	10.3%	11.1%	3.9%	21.8%	17.2%	17.8%	14.2%
4천만 이하	8.7%	11.1%	3.5%	24.6%	17.8%	22.1%	15.6%
5천만 이하	7.3%	10.7%	3.7%	25.2%	15.5%	24.9%	15.7%
6천만 이하	5.5%	10.8%	3.0%	22.8%	16.1%	23.1%	14.9%
8천만 이하	5.1%	10.1%	3.1%	19.6%	15.4%	23.6%	14.2%
1억 이하	4.6%	9.6%	5.3%	16.5%	12.7%	19.1%	12.5%
2억 이하	4.6%	9.0%	6.3%	16.6%	13.4%	17.1%	12.4%
3억 이하	6.9%	8.5%	5.7%	16.5%	12.1%	11.8%	10.9%
5억 이하	6.6%	8.6%	5.0%	17.1%	14.6%	8.9%	10.8%
7억 이하	7.2%	6.7%	9.7%	13.6%	15.8%	5.5%	10.2%
10억 이하	8.0%	12.4%	7.9%	16.0%	16.5%	5.0%	11.5%
10억 초과	4.0%	10.1%	16.5%	11.6%	9.7%	2.9%	10.1%

주: 종합소득세의 경우 결정세액이 있는 기본공제인원 수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기본공제적용 인원수(2023년 귀속 1,148만명)와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수(2023년 귀속 864만명)의 차이가 커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 수 증가율 사용

(3) 추계 결과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기본공제금액을 170만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할 경우 소득세는 2026~2030년 5년간(징수기준) 14조 5,2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는 2025~2030년 6년간 15조 7,10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14]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 시 총 세수효과 : 근로소득세

(단위: 억원)

총급여 규모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7,859	-9,868	-12,212	-14,949	-18,345	-24,346
1천만 이하	-	-	-	-	-	-
1.5천만 이하	-11	-12	-13	-14	-15	-16
2천만 이하	-48	-51	-52	-54	-54	-54
3천만 이하	-258	-308	-361	-419	-722	-1,363
4천만 이하	-760	-941	-1,148	-1,384	-1,650	-1,947
4.5천만 이하	-354	-438	-535	-645	-769	-908
5천만 이하	-378	-467	-568	-683	-811	-955
6천만 이하	-755	-933	-1,136	-1,367	-1,626	-1,916
8천만 이하	-1,239	-1,516	-1,828	-2,178	-2,565	-4,786
1억 이하	-1,375	-1,715	-2,106	-2,555	-3,065	-3,642
2억 이하	-2,395	-3,102	-3,958	-4,991	-6,219	-7,677
3억 이하	-199	-267	-353	-460	-594	-759
5억 이하	-66	-88	-116	-152	-195	-249
10억 이하	-18	-24	-31	-40	-51	-63
10억 초과	-3	-4	-5	-7	-9	-11

주: 귀속연도 기준

[표 15]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 시 총 세수효과 : 종합소득세

(단위: 억원)

종합소득금액 규모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5,327	-6,970	-9,600	-12,261	-15,703	-19,669
1천만 이하	-264	-297	-330	-362	-393	-422
2천만 이하	-448	-569	-711	-878	-1,072	-1,296
3.5천만 이하	-1,246	-1,656	-2,167	-2,803	-3,584	-4,538
4천만 이하	-284	-382	-506	-662	-857	-1,098
5천만 이하	-431	-581	-770	-1,009	-1,307	-1,677
6천만 이하	-308	-412	-867	-1,128	-1,451	-1,849
8천만 이하	-653	-867	-1,134	-1,466	-1,874	-2,371
1억 이하	-366	-479	-901	-1,148	-1,446	-1,805
2억 이하	-883	-1,155	-1,488	-1,894	-2,586	-3,222
3억 이하	-205	-264	-335	-421	-522	-642
5억 이하	-133	-172	-218	-273	-339	-416
7억 이하	-46	-58	-74	-92	-114	-139
10억 이하	-28	-37	-47	-59	-79	-97
10억 초과	-32	-41	-52	-64	-79	-97

주: 귀속연도 기준

[표 16]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효과 : 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7,859	-9,868	-12,212	-14,949	-18,345	-24,346	-87,580	-14,597
종합소득세	-5,327	-6,970	-9,600	-12,261	-15,703	-19,669	-69,530	-11,588
합계	-13,186	-16,837	-21,812	-27,211	-34,048	-44,015	-157,109	-26,185

-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6년 2조 3,25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4조 5,291억원(연평균 2조 9,0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6년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6년 2월) 및 20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6년 5월)로부터 발생하는 세수효과와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 동시 발생⁴⁾

[표 17]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 : 징수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15,260	-14,679	-14,949	-18,345	-24,346	-87,580	-17,516
종합소득세	-7,990	-7,791	-10,915	-13,592	-17,423	-57,711	-11,542
합계	-23,250	-22,470	-25,864	-31,937	-41,769	-145,291	-29,058

4)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함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경우 법 시행 첫 해인 2026년은 전년도 귀속소득분에 대한 세수효과와 당해연도 세수효과가 동시에 발생함. 다만, 2026년 2월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3월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4월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2026년에는 당해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와 9/12(9개월분)가 반영되고, 나머지 3/12(3개월분)은 2027년(연말정산 시)에 반영되며, 2027년부터는 당해 귀속연도 세수효과가 전부 당해연도에 발생함.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해연도에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 및 당해연도 중간예납분에 대한 세수효과를 반영함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